

# 공 고

##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- 63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6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###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

『방송법』,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 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계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**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**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 할 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- 방송법 제108조

#### 2. 계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# 3. 기타 관련사항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국세징수법 등 참조

#### 4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## 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(단위:원)

연 번	세 목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과태료	0178200004530000760	(주)한국어문방송	211-88-8422- 110111-49077--	10,000,000원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(장항동 1791)
2	과태료	0178200004530000241	실정울 (투세븐슈즈)	71.11.29. 209-07-24267	15,000,000원	서울 종로구 종로44길 21
3	과태료	0178200004530000253	손창완 (와니크래프트)	72.01.17. 209-06-16135	5,000,000원	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77 서울 중랑구 면목로37길 41- (면목동)